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센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만료일 또는 퇴소일 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수가 변동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쌍방 간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우너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무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 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배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6.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 서비스 중 의료기관이용으로 발생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월 한도액 초과시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쌍방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②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5등급	32,490	44,650	56,360	56,360
인지지원등급	32,490	44,650	56,360	56,360
등급외자	시간과 무관하게 식비 포함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시간	단가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방문목욕 이용시간당 금액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먹거리에 의한 식대로 해당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 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5. 비용부담의 방법

① 자동이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 8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①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이렛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②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경우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일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자동이체,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전주평화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4, 예은빌딩 4층
063-227-5016(Tel), 063-229-5016(Fax)
ksc50160@naver.com